

보도시점 2026. 2. 12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 배포 2026. 2. 11.(수)

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...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

-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한 동화기업에 과징금·중건기업 첫 사례, 예외 없이 처벌 -

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건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,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(이하 환경범죄단속법)’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.

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(MDF, PB)를 제조하는 중건기업이며,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‘환경범죄단속법’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* 대기업을 넘어 중건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.

*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(환경범죄단속법 ‘19.11.26 개정)된 이후
(주)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(‘21.11.22), HD현대오일뱅크(주) 약 1,761억원(‘25.8.28) 부과

또한,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‘물환경보전법’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,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‘대기환경보전법’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.

동화기업의 복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,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‘중유(병커시유)’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.

이 과정에서 ‘대기환경보전법’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*됐다.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. 또한,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,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(12ppm)을 초과하여 최대 31.3ppm까지 배출됐다.

< *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내역 >

구분	허가적용기준	배출 최대치
시안화수소	0.05ppm	6.4ppm
포름알데히드	0.08ppm	7.38ppm
염화수소	0.4ppm	3.17ppm
불소	0.05ppm	0.12ppm
크롬	0.1mg/m ³	0.5mg/m ³
니켈	0.01mg/m ³	8.3mg/m ³
납	0.05mg/m ³	0.5mg/m ³

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*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,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,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**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.

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, 과징금 부과 여부,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(감사관)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·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

**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(대법원, ‘25.12.11)

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“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”라며, “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질의응답.
2. 과징금 산정방법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	책임자	과 장	원지영 (044-201-61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형 (044-201-6166)

1. 동화기업 사업장별 위반내역?

- (북성공장 및 대성목재공업) 고의로 허가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(「환경범죄단속법」 제12조(과징금) 제1항제5호가목*)
 -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1항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 위반
-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샌더분진, 백필터분진 등)을 북성공장 건조시설에서 일 약 37.5톤씩, 대성목재공업 건조시설에서 일 약 35톤씩 불법소각, 그 결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
- (아산공장)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(「환경범죄단속법」 제12조(과징금) 제1항제1호가목*)
 -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1조제1항제1호(방지시설 미가동) 위반
- 소각시설 방지시설 중 반전식반응탑(SDR)에 액상 소석회를 분사하여 염화수소 등 산성가스를 저감하여야 함에도,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공극을 막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가동한 채 소각시설 가동

2. 과징금 부과에서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차이가 있는지?

- 기본적인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는 동일하나,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기준부과율을 차등 적용함
- (대기업)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매출액의 3.1%
- (중견·중소기업) 최근 5년간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매출액의 2.6%
- ※ 최근 5년간 1회 위반인 경우 기업 규모 구분없이 매출액의 1.0%

$$\diamond \text{과징금} = \text{① 위반부과금액} + \text{② 정화비용} - \text{③ 감면금액}$$

① (위반부과금액) 기준부과율 + 위반행위별 가중치 + 위반기간별 가중치

○ (기준부과율) 매출액 규모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

매출액 규모 (최근 3년 평균)	위반행위 횟수(최근 5년간)	
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
중소기업 규모 이내	매출액의 1.0%	매출액의 2.6%
중소기업 규모 초과		매출액의 3.1%

※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정액과징금 부과

○ (위반행위별 가중치) 위반행위의 벌칙 등에 따라 차등 부과

구 분	300만원이하 과태료	벌금 또는 1천만원 과태료	징역형			
			1년~ 2년	3년	5년	7년
매출액가중치	0%	0.2%	0.4%	0.6%	0.8%	1.0%

○ (위반기간별 가중치) 위반행위 전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

구 분	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
매출액가중치	0%	0.3%	0.6%	1.0%

② (정화비용) 오염물질 제거비용 + 원상회복비용

- (정화비용 범위) 오염물질 제거비용, 원상회복비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·설계·검증 비용을 포함
- (정화비용 면제·유보)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, 사업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

③ (감면금액(위반부과금액만 대상)) 자진신고 감면 + 재량 감면

- (자진신고 감면) 자진신고 시점, 조사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면기준·범위 결정
- (감면 대상)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
- (재량 감면) 과징금 처분 대상자의 피해의 정도,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0% 이내에서 감면
- (감면권자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- (감면대상자) 위반부과금액이 산정되고 감면을 받은 자

④ 과징금 심의위원회

- (구성) 위원장 1명(감사관)을 포함한 15명 내외(민간인 5인 이상)
- (역할)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금액, 위반 부과금액 감면사항,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등에 대한 심의

5 과징금 부과절차도

